#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

의 안 번 호 109

제안연월일 : 2023. 04. 제 안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. 7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·수탁기간 연장(재협약) 계획을 수립하고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\* 시설관리 및 운영
  - \* 명칭은 평창관광센터이며, 별칭은 "SPACE 창공"

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-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7조
  - 「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」 제11조
- 추진 필요성
  - 위탁업무가 시설 및 대관 운영 등 관리사무로,
  -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이 용이

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소재지 :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

- 토지 : 송정리 1383-1번지 외 2필지(928.24m²) ※ 국토교통부 소유

- 건물 : 컨테이너구조 지상2층(연면적 933.2m²)

○ 지원시설

- 1층 : 사무공간, 작은도서관, 전시공간, 회의공간, 여행자라운지 등

- 2층 : 사무공간 등

○ 위치도



## ○ 전경 사진



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재협약기간 : 2023. 8. 1. ~ 2025. 12. 31.
  - 현재 2021. 8. 1. ~ 2023. 7. 31. (2년) ※ 2019. 8. 최초 위탁

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 수탁자 재협약 :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
- 「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」제11조
  - 공개모집 예외 규정 적용(평창군관광협의회 위탁운영 시)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민간위탁금 119,110천원(군비) ※ 2023년 당초예산 기준
  - 종사자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 등 <br/>※ 매년 인건비 상승 등 사유로 예산 증가

## 아. 민간위탁 재협약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 - 평창군 직영도 가능하나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
  - 주무관청의 관리와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음
- 경제적 효율성
  - 평창군 직영과 동일한 비용(관리인력 인건비, 운영비)이 소요 되지만, 수탁기관 사무국이 대상 시설 내 1층 사무공간에 상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군 직영의 원거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음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,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
  -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지역관광추진조직 (DMO)으로서 관광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님
  - 지역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도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므로,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 -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용이
  - 운영관리·고객지향 활동 성과가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표를 구성하고,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 부여
    - ※ S등급 "탁월" (90점이상), A등급 "우수" (80점이상 90점미만)
      재협약 진행 가능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 -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이 용이
  - 정기적인 감사 및 결산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

## 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우수(A등급) : 재협약 추진 타당
  - 수도권을 잇는 진부역 기능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문화·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
  -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(사)평창군관광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관광 사업체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관광 네트워크 형성 도모

#### 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운영현황
  - 관리인력 : 기간제근로자 2명
  - 시설운영 : 09시 ~ 18시 ※ 연중 3일(신정, 구정, 추석)만 휴관
- 관련자료
  - 관계법령 발췌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"재협약"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·수탁협약(이 조례에서 "협약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전문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있다.

②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 제4항제5호에 따라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.